

『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라. 상정일자

- 2006년 11월 17일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- 2006년 12월 21일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재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경 환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물 관리종합 대책에 의하여 200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
- '99. 4월 국무총리 주재 『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』 에서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확정
- 기채상환 재원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비 확보

- 사용료의 현실화로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 유지와 하수도 민원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

다. 주요내용

- 하수도 요금의 조정 : 현행 요금 수준에서 평균 39.4%인상 (안 별표1)
- 이의 신청기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(안 제20조)
- 체납세 관련 규정중 단서 조항 삭제(안 제2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, 제131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, 제137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
- 「하수도법」 제21조(사용료 등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(요금)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2조의2(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) 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
- 「지방세법」 제73조(이의신청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시 과도한 인상율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요율 조정 등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 보류된 건으로서
- 기채상환 자금 확보 및 하수도 노후관 교체, 투자재원 확보 등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도한 인상은 지양하되 적정한 부분의 요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 부칙②의 적용례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에 따른 최소한의
홍보 기간이 필요하므로 2007년 2월 고지분 부터 적용함이
타당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